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박상구 의원 (찬성자 17명)

나. 의안번호 : 제 2301 호

다. 발의일자 : 2021. 4. 2.

라. 회부일자 : 2021. 4. 6.

2.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 혁신 차원에서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관련 산업을 지역건설산업에 포함 함(안 제1조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건설산업과 공사업으로 국한하던 것에서 규제 혁신 차원으로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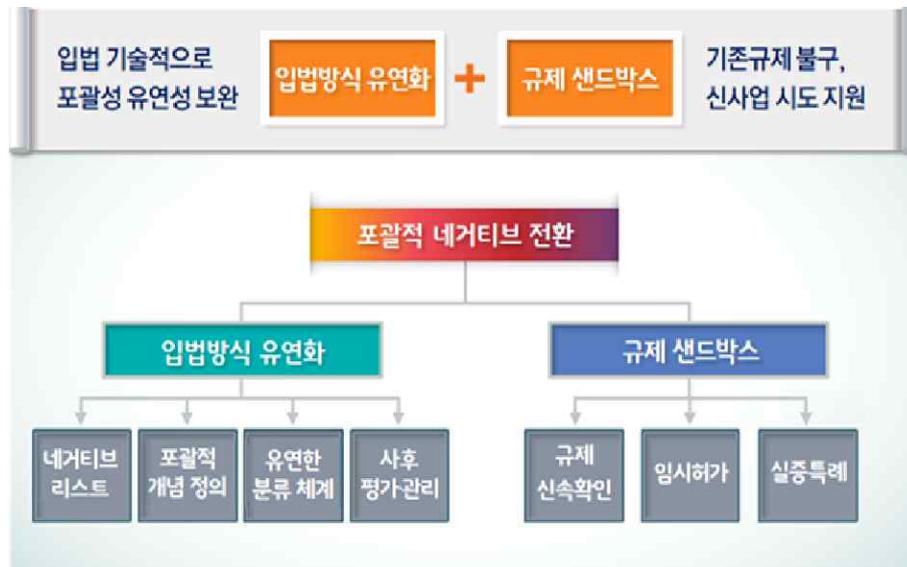
[표]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현행과 같음) ----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u>공사업</u> 을 말한다.	1. ----- ----- ----- ----- <u>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u> 을 말한다.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은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으로 2020년 기준 12,931개 업체(종합건설 1,963 + 전문건설 10,968)이며,
- 본 개정안은 여기에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서울시 관할지역 내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체는 75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이 포함될

경우 조례 제4조1)에 따라 격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분야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²⁾ 전환 중 포괄적 개념 정의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개념도](출처: 국무조정실)

- 1)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격년 단위로 12월 31일 까지 차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바로 전 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
 4. 지역건설산업자 및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수수료·수수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이외에 최근 2년간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결과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2)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